

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4,460,603	17,233,818
일반회계	506,175,698	15,185,271
특별회계	68,284,905	2,048,547
공기업특별회계	58,469,754	1,754,093
상수도공기업	31,670,465	950,114
하수도공기업	26,799,289	803,979
기타특별회계	9,815,151	294,455
의료급여기금운영	980,726	29,42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96,050	17,8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5,700	4,071
공영개발사업	403,436	12,103
농공지구조성사업	3,774,214	113,226
수질개선	532,218	15,967
주택사업	2,867,988	86,040
기반시설	22,489	675
장기미집행	502,330	15,07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440,00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9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